

2000. 12. 9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I. 검토방향

-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의 대부분이 국비 지원에 의해 운용되는 예산인 만큼, 심층분석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 장기적으로 교육계에서 주장하는 「교육자치」와 곧 닥쳐올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적인」 실시를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예산안의 검토를 통하여 지방교육 재정의 문제점을 발굴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 지난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예산편성 추이를 조명하고
- 전년도 대비식 점증분석 방식을 완전히 지향하고 다음과 같이 역점을 두어 분석 검토 하였음.

첫째, 관계법령 및 교육부 예산편성지침 준수

둘째, 경비부담의 적법성

셋째, 사업설정의 합목적성

넷째, 사업량(물량) 결정의 적정성

다섯째, 편성단가의 현실성

여섯째, 지출의 효율성

II. 제안서류 및 서식

1.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4(예산안의 첨부서류)

- 가. 예산편성 기본지침
- 나. 세입·세출예산사항 설명서
- 다.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 라. 명시이월비 설명서
- 마. 결산총계표 및 순계표
- 바. 지방채 조서
- 사. 공유재산 조서
- 아. 채무부담행위 조서
- 자. 계속비 조서
- 차. 지방재정계획서
- 타.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 파.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2. 교육부 예산편성 지침(113쪽)

- 가. 예산총칙
- 나. 세입세출예산
 - (1) 총괄표
 - (2) 관별예산
 - (3) 기관별 세출예산(별첨2호서식)
 - (4) 세입·세출예산사항 설명서(별첨3호서식)
 - (5) 세출예산 성질별 조서(별첨4호서식)
 - (6) 세출예산 조서(별첨5호서식)
 - (7) 세입·세출예산 각목 명세서(별첨6호서식)

- 다. 계속비 조서(별첨7호서식)
- 라. 명시이월사업 조서(별첨8호서식)
- 마. 지방채 조서(별첨9호서식)
- 바. 채무부담행위 조서(별첨10호서식)

3.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령이 정하는 예산안 제출시 제출할 서류는 모두 제출하였으나
- 예산서식의 “전년도예산액” 기재란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의거 2000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함으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과 2001년도 당초예산요구액과의 비교가 어렵고
- 예산사항설명서의 글씨가 너무작아 예산안 검토에 적지 않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 효율적인 예산안 검토 및 심의를 위하여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의 시정개선하여야 할 것임.

Ⅲ. 교육부 예산편성지침 주요골자

1. 대규모 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결과(20억 원이상 신규사업)를 기초로 예산편성(18쪽)
2. 예산편성지침 준수
 - 가. 교육부장관이 정한대로 「예산과목과 구분」 하여 예산편성 : 미준수시 공무원행정조치(27쪽)
 - 나. 예산편성기본지침 준수 : 법령의 구체적인 집행명령 (훈령)으로 구속력 지님, 미준수시 법령위반(28쪽)
3. 세입편성지침(30~31쪽)
 - 가. 당초예산에 반드시 계상 : 일반회계전입금, 재산매각대
 - 나. 원인자부담원칙 철저 적용 : 지방교육재정수요 유발시
4. 세출편성지침(32~35쪽)
 - 가. 일회성, 행사성 사업 절대지양
 - 나. 연례적으로 편성되어온 모든사업을 새로운 영기준 관점에서 평가하여 최적예산편성
 - 다. 중복투자지양, 사업간 연계강화, 기능별로 묶어서 편성관리
 - 라. 부서별 및 총액배분(34쪽)
 - 마. 각종회의, 협의회, 경진대회, 발표회 등에 참석하는 공무원 급량비는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예산과목 확대 해석 하여 편성금지(34쪽)

- 바. 외부단체 지원사업비 전면재검토, 운영비 보조금지
하고 사업비 중심으로 최소경비지원(35쪽)
- 사. 각종행사 및 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최소화(35쪽)
- 아. 사립학교 보조 : 2~3년치 결산을 고려하여 기준재정
수요 부족액 보전(38쪽)

5. 건전재정지침(41쪽)

- 가. 일시차입금 : 전체예산의 10% 이내
- 나. 채무부담행위 : 전체예산의 3% 이내
- 다. 지방채 채무부담행위포함 채무비율 : 10% 이내
※ 단, 정년퇴직, 명퇴수당 별도
- 라. 예비비 : 전체예산의 0.5% 이상 계상
- 마. 업무추진비(기관 + 사업) : 예산규모의 0.120% 이내
※ 직책급 및 직급보조 업무추진비 제외

IV. 교육재정 추이 및 2001년도 예산개요

1.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 가. '97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24.4%
- 나. '98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7.1%가 증가 되었으나
- 다. IMF 한파로 인하여
'99년도에는 '98년도 대비 14.6%가 감소 되었으며
- 라. 2000년도에는 '99년도 대비 18.2%가 증액된 7천 527억 4,336만 3천원을 요구하였고
- 마. 2001년도에는 2000년도 대비 7.9%가 증액된 8천 122억 2,394만 7천원을 요구 하였음.

2. 세입예산의 재원별 부담은

- 가. '96년도 국비지원액은 5,124억 5,752만 8천원으로
국비부담율은 91.6%고 지방비는 8.4% 이었고
- 나. 2000년에는 국비 87% 지방비 부담 13% 이었으며
- 다. 2001년에는 국비 81% 지방비 부담은 19%로 계상하였음.

3.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 세입예산

- 가. '99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8.2%를 감액하였으며
- 나. 2000년도에는 114%가 증가한
850억 7,648만원을 계상하였고
- 다. 2000년도에는 지방채 371억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라. 2001년도에는 2000년도 대비 54.9% 증가(534억 3,593만 2천원)한 1천 508억 2,141만 2천원을 계상하였음.

4.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인건비는

- 가. '97년도에 4,695억 9,642만원
- 나. '98년도에 전년대비 4.9%
- 다. '99년도에 전년대비 0.8%가 증액 되었으나
- 라. 2000년도에는 정년단축 및 구조조정 등으로 전년대비 32.0%를 감액한 3,382억 6,2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나
- 마. 2001년도에는 2000년도 대비 11.9% 증가한 3,785억 1,614만 3천원을 계상하였음.

5. 물건비는

- 가. '97년도에 710억 8,082만 8천원
- 나. '98년도에는 전년대비 20.2% 증액
- 다. '99년도에는 전년대비 36%가 감액 되었으나
- 라. 2000년도에는 전년대비 73.5%가 증가한 949억 4,1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마. 2001년도에는 전년대비 16.9% 증가한 1,109억 9,091만 4천원임.

6. 경상이전비는

- 가. '97년도에 482억 9,058만 8천원
- 나. '98년도에 전년도 대비 9%가 증가 되었으나
- 다. '99년도에는 전년대비 78.3%가 감액 되었으며
- 라. 2000년도에는 전년대비 1,713.0%가 증가된 2,084억 5,300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 마. 2001년도에는 전년대비 8.2%가 증가된 2,256억 1,586만 5천원을 계상 요구 하였음.

7. 그리고 자본적 지출은

- 가. '97년에 1,014억 2,423만 1천원
- 나. '98년에는 전년대비 6.2%가 증액 되었고
- 다. '99년에는 전년대비 37.6%가 감액되었으며
- 라. 2000년도에는 전년대비 29.4%가 증액된 870억 8,123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 마. 2001년도에는 전년대비 15.0%가 감액된 740억 1,9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음.

8. 물건비중 관서운영비는

- 가. '97년에 35억 8,111만원
- 나. '98년에는 전년대비 12.9%
- 다. '99년에는 전년대비 36.5%가 증액되고
- 라. 2000년도에는 전년대비 72.2%가 증액된 95억 1,397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마. 2001년도에는 전년대비 25.8%가 증액된 119억 6,439만 3천원을 계상하였음.

9. 그리고 사학지원비는

- 가. '97년도에 421억 5,875만 1천원
- 나. '98년도에 전년대비 8.3%
- 다. '99년도에 전년대비 1.7%을 계상하였고
- 라. 2000년도에는 전년대비 19.1%가 증액된 553억 4,969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마. 2001년도에는 전년대비 17.6% 증액된 650억 9,087만 3천원을 계상하였음.

V. 검토의견

-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총규모 8,122억 2,394만 7천원으로서 2000년도 기정예산 8,347억 819만원 보다 2.6%인 224억 8,424만 3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나 금년도 당초예산 7,527억 4,336만 3천원 보다는 7.9%인 594억 8,058만 4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 세입예산 >

- 세입예산은 재원별로
 - 국가부담 수입이 81.4%인 6,614억 253만 5천원
 - 도전입금인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이 10.4%인 840억 7,662만 9천원
 - 자체수입인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이 8.2%인 667억 4,478만 3천원입니다.

< 연도별 재원별 세입예산 구조 >

(단위 : 천원)

연도별 재원별	'98		'99		2000		2001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합 계	744,776,209	100	636,620,456	100	752,743,363	100	812,223,947	100
국가부담수입	606,206,322	93.5	596,866,601	93.8	655,357,883	86.9	661,402,535	81.4
교육재정교부금	473,064,111	63.5	420,203,001	66.0	457,630,000	60.8	542,417,000	66.8
양 여 금	191,575,809	25.7	145,395,000	22.8	163,059,000	21.7	114,245,447	14.0
국고지원금	5,650,402	0.8	976,600	0.2	3,860,883	0.4	4,740,088	0.6
교육환경개선교부금	25,916,000	3.5	30,292,000	4.8	30,808,000	4.1	-	-
자치단체부담수입	4,300,157	0.6	156,951	-	4,269,380	0.6	84,076,629	10.4
자 체 수 입	44,269,728	5.9	39,596,902	6.2	93,116,098	12.5	66,744,783	8.2
주민부담및기타	2	-	2	-	2	-	0	-

* 당초예산 기준임

- 2001년도 국가지원예산은 2000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0.9%밖에 증액되지 않았으므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때 국가지원예산 획득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 교육관계 예산 투자는 사전계획하고 예측이 가능함에도 매년 당초예산 확정후 교육부에서 다액의 지원예산을 교부받음으로써 예산의 적기 투자가 어렵고, 과다한 불용액을 발생 이월함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익년도에 소요되는 국가지원 예산은 교육부의 방침만 기다릴것이 아니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미리미리 보조요청 하거나 교육부에 시정되도록 건의하는 등 노력이 필요 하다고 보며
- '99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교원정년조정 및 명퇴수당 등의 부족금으로 749억원의 기채 설명시 교육부의 재원보조 약속이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 사용료, 수수료, 잡수입 등의 자체세입이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반대급부적 수수료의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실비수준의 수수료를 징구하여야 하나 2001년도 교육청의 검정수수료 수입은 82백만원인데 비하여 검정소요 경비는 224백만원(일반직 24, 중등교원 112, 초등 45, 검정고시 및 수능 43)으로 이와같은 사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조정하거나 경비를 대폭 절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연도별 자체세입 현황 〉

(단위 : 천원)

과목별 연도별	'98		'99		2000		2001	
	예산액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사용료및수수료	431,220	423,208	△1.9	406,136	△4.0	221,709	△45.4	
잡 수 입	4,538,995	1,955,705	△56.9	4,119,583	110.6	3,689,000	△10.4	
이 월 금	1 (29,165,586)	1 (56,900,679)	- (95.1)	12,309,000	- (△78.4)	21,463,759	74.4	

※ 당초예산 기준이며 이월금의 ()내는 제1회 추경예산임.

〈 세출예산 〉

-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7.9%인 594억 8,058만원이 증액 계상된 총 8,122억 2,394만 7천원으로서
- 세출예산안의 구조별로는
 - 급여 및 복지예산이 65.1%인 5,290억 5,483만 1천원
 - 학교교육비가 29.3%인 2,379억 6,827만 5천원
 - 교육행정비가 1.5%인 124억 6,746만 6천원
 - 문화 및 평생교육비가 0.2%인 11억 733만 2천원
 - 기타경비가 3.9%인 316억 2,604만 3천원으로 계상요구한 바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과 관련한 예산운영 문제입니다.

현행법령상 당해연도 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고 사업의 성격 및 재정 형편상 수년이 걸릴것으로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계속비 사업예산으로 계상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신설, 대규모 교육 시설의 증개축 사업의 경우 당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다음해에 이와 관련한 다른부분의 예산을 편성하는 이른바 “조각” 예산을 계상 함으로써 매년 부분별 설계, 발주, 시공으로 인한 인력과 예산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교육청 본청사의 보수의 경우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 체계적으로 당해년도에 보수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제대로 보수를 할 수 있음에도 매년 청사보수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예산계상의 자체심의 노력의 부족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교육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면서 2001년도 제출한 예산안중 일부예산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계상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사안도 있습니다. 예컨대 교육청에서 차입한 채무의 상환 또는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였다면 마땅히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삭감하게된 사유와 이자를 제때에 내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붙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소요경비 부담의 타당성 문제입니다.

공·사립학교 교원자격연수 경비를 자치단체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는데 그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사립학교 교원의 개인자격 연수경비까지 과연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한 청소년한마음 축제의 주관부서는 국가기관인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넷째, 예산의 방만한 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 사학지원비의 경우 당초예산기준 '98년도에 551억, '99년 460억 2000년도에 553억을 지원하고 2001년도에는 2000년도보다 17.6%가 증가한 650억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 열린교육연구회, 각종 교과연구회 운영은 학부모입장에서 보면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개인적으로 당연히 연구활동을 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동호인 단체 성격의 이들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보는데 위 2가지 사안에 대하여는 밀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섯째, 예산투자의 효과성 문제입니다.

사업비 예산의 계상은 투자로 얻어지는 이익이 투자로 잃는 이익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사업을 우선 투자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계상하여야 함에도 간이골프장 건설사업 예산(단재교육원)과 같이 예산투자의 효과가 적거나 교육생의 반발의 소지가 있는 예산계상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섯째, 예산집행후의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 제7차 교육과정운영, 교단선진화, 지방교육의 정보화 전산화를 위하여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첨단교육장비 보급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매년 투자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육현장에서는 이미 확보한 전자·통신장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거나 관리를 제대로 못하여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며
- 사학재단을 비롯한 교육관련 각종 지원예산이 교육목적과 도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한 사전 감시와 감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일곱째, 예산의 절감노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 2001년도 교육행정비중 국외여비는 금년도보다 8,373만원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9,45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지양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덟 번째,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유치원 종일반 보조원은 2001년도 3월 1일 임용하는 것이고 퇴직금은 1년후인 2002년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번 예산에 계상한 사유
- 사무실 OA시스템설치 사업은 교육부의 교육개혁추진 평가를 위한 사업으로 소모성 예산은 아닌지

- 2001 연구시험학교 예산편성을 보면 도지정 연구시험학교는 교당 5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반면 시·군별 자체시험 단지는 교당 최고 5천만원까지 계상하였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
- 충북교육소식 발간에 있어서 2001년도 예산에 편집위원 수당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편집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수당은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는 세부사업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학교평가 우수교 지원사업은 2000년도 예산심의시 감액 하였는데 2001년도에 다시 증액 편성한 사유와
- 충북교육 발간은 분기별로 하던것을 2001년도에는 반기별로 발간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유 및 효과와
- 음성교육청의 시설비는 교육위원회에서 26억 3,887만 2천원이 삭감되어 향후 학교시설에는 큰 문제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